

<b>의안 번호</b>	<b>2174</b>	<b>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1. 9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1. 9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2.(화)

## 2. 제안이유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23. 6. 11. 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명위원회의 심의 ·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2조제1호)
- 나. 지명위원회의 정원, 위원장 · 부위원장, 위원에 관한 기준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회의 개최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기준을 정함(안 제6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 2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23. 6. 11. 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근 거 법 규

##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)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